



기업을 위한 비교표

중재냐 법원이나? 상사분쟁 해결을 위한 선택

11개 기준 비교 · 2010년 상사중재법 및 민사소송법에 근거

분쟁해결 조항이 왜 중요할까?

대부분의 상사계약에서 "분쟁해결" 조항은 계약서 맨 뒤에 위치해 크게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면, 바로 이 조항이 사건을 상사중재로 해결할지 법원으로 해결할지를 결정합니다. 중재와 법원은 소요 기간, 비용, 비밀보장, 심급 수, 집행 가능성에서 서로 다른 절차를 가진 별개의 분쟁해결 기관입니다.

현행법상 당사자 간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분쟁은 중재로 해결됩니다. 중재합의는 분쟁 발생 전 또는 후에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0년 상사중재법 제5조). 중재합의가 없거나 있더라도 무효이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기본 관할 기관이 됩니다.

“당사자 간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으며, 중재합의가 없거나 중재합의가 무효 또는 이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원이 기본 관할 기관이 된다.”

법적 근거: 2010년 상사중재법(법률 제54/2010/QH12호) 제5조 및 제6조.

중재와 법원 비교표

기준	상사중재	법원	비고
1. 수리 요건	중재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함(제5조, 제16조). 중재합의가 있으면 법원은 사건 수리를 거부함(제6조).	상사분쟁에 대해 당연 관할권을 가지며 (민사소송법 제30조), 별도의 합의가 필요 없음.	핵심 차이: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하는 반면, 법원은 당연 관할권을 가집니다. 중재합의의 유무가 분쟁이 어느 절차로 진행될지를 결정합니다.
2. 분쟁의 범위	상사활동에서 발생한 당사자 간 분쟁. 또는 당사자 중 최소 한쪽이 상사활동을 하는 경우에 발생한 분쟁. (제2조).	광범위한 관할권: 민사, 상사, 노동, 혼인가족 등(민사소송법 제30조).	법원은 더 넓은 관할 범위를 가지며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포괄하는 반면, 중재는 제2조에 따른 상사분쟁으로 한정됩니다.

중재와 법원 비교표

기준	상사중재	법원	비고
3. 분쟁해결자	중재인은 당사자가 직접 선정하며(제3조5항, 제20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음.	판사는 법원이 배정하며(민사소송법 제36조), 당사자는 선택할 수 없음.	중재는 당사자가 전문성에 따라 분쟁 해결자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반면, 법원은 규정에 따라 판사를 배정합니다. 이는 당사자의 선택권에 관한 차이입니다.
4. 심급 수	단심제; 중재판정은 최종적이며 즉시 효력을 가짐(제4조5항, 제61조5항).	2심제(1심·항소심)(제17조, 제35조, 제37조)	중재는 단심제이므로 신속하고 최종적인 반면, 법원은 2심제이므로 사건 내용을 다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속성과 항소 가능성 간의 상충 관계를 보여줍니다.

중재와 법원 비교표

기준	상사중재	법원	비고
5. 공개 여부 / 비밀보장	비공개로 진행됨(제4조4항, 제55조1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로 진행됨(민사소송법 제15조2항).	중재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반면, 법원은 공개로 진행됩니다. 이 차이는 분쟁 정보의 비밀보장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 장소 및 언어	당사자가 장소(해외 포함, 제11조)와 언어(제10조)를 합의로 정할 수 있음.	관할 법원 소재지에서 심리하며, 소송 언어는 베트남어로 고정됨.	중재는 합의에 따라 장소와 언어를 유연하게 정할 수 있는 반면, 법원은 소재지가 고정되어 있고 베트남어를 사용합니다. 이 차이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분쟁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중재와 법원 비교표

기준	상사중재	법원	비고
7. 준거법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분쟁의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음(제14조).	베트남 법의 국제사법(법률저촉) 규정에 따라 적용됨.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분쟁의 경우, 중재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반면, 법원은 베트남의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적용합니다.
8. 제소기간(소멸시효)	정당한 권리·이익이 침해된 때로부터 2년(제33조).	상사분쟁의 경우 2년(2005년 상법 제319조).	두 절차의 제소기간은 기본적으로 동일(2년)하므로, 이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 요소가 아닙니다.

중재와 법원 비교표

기준	상사중재	법원	비고
9. 비용	중재비용은 중재센터가 정하며(제34조), 일반적으로 더 높음.	소송비용·수수료는 결의 제 326/2016/UBTVQH14호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더 낮음.	명목상 중재비용이 법원 소송비용보다 높은 경우가 많지만, 중재의 해결 기간은 대체로 더 짧습니다.
10. 취소·재심 위험	제68조2항의 5가지 사유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며, 법원은 사건의 실체 내용을 재심리하지 않음(제71조4항).	항소·항의를 통해 항소심 절차로 재심리될 수 있음.	최종 심사 체계가 다릅니다: 중재판정은 제68조의 사유로만 취소될 수 있고 실체 내용은 재심리되지 않는 반면, 법원 판결은 항소심·감독심·재심을 통해 다시 심리될 수 있습니다.

중재와 법원 비교표

기준	상사중재	법원	비고
11. 해외 집행	1958년 뉴욕협약(가입국 170개국 이상)에 따라 국경을 넘어 집행 가능함(민사소송법 제424조).	베트남 법원 판결은 해외에서 집행이 어려움(사법공조조약 필요).	국제 집행 가능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재판정은 1958년 뉴욕협약에 따라 국경을 넘어 집행되는 반면, 베트남 법원 판결은 사법공조조약 체결 여부에 좌우됩니다.

출처: 2010년 상사중재법(법률 제54/2010/QH12호); 민사소송법(통합본); 2005년 상법(법률 제36/2005/QH11호); 결의 제01/2014/NQ-HĐTP호;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

기업은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

중재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경우

- 계약에 외국적 요소가 있거나 상대방·자산이 해외에 있는 경우.
- 높은 수준의 비밀보장이 필요한 경우(영업비밀, 평판, 거래관계 보호).
-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해결자가 필요한 전문분야 분쟁인 경우.
- 신속하고 최종적인 결과를 원하는 경우(단심·확정판정).

법원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 계약에 중재합의가 없거나 중재합의가 무효 또는 이행 불가능할 위험이 있는 경우.
- 내용상 오류 위험을 줄이기 위해 2심제를 원하는 경우.
- 다수 당사자가 관련되거나 계약 외 제3자가 있는 분쟁인 경우.
- 명목 비용이 낮은 것을 우선시하며 당사자 모두 국내에 있는 경우.

기업이 해야 할 일

- 1 분쟁이 발생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즉시 분쟁해결 방식을 확정하십시오.
- 2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 중재센터 명칭, 중재규칙, 중재인 수, 장소, 언어, 준거법을 명확히 기재하십시오.
- 3 중재합의가 2010년 상사중재법 제18조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하십시오.
- 4 외국적 요소가 있는 거래의 경우: 상대방의 자산 소재지를 고려해 집행이 가장 용이한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중재조항 구성 예시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모든 분쟁은 [중재센터 명칭]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센터 명칭]에서의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중재인의 수는 [...]명으로 하고, 중재지는 [...], 중재언어는 [...], 준거법은 [...]으로 한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문의하기

DEDICA의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 팀이 언제든지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자문과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지금 바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업 및 투자

형사/범죄

상시 법률자문

인수합병(M&A)

분쟁해결

상표 및 저작권



주소

호찌민시 쑤언호아동 하이바쯔ং 거리 171번지, A&T 빌딩 11층



전화

+84 39 969 0012



이메일

david@dedica-law.com



Website

www.dedica-law.com



지금 바로 전화하시거나 메시지를 남겨 상담을 받으십시오.